

의안번호	2200624
의 퇴 인	김영배의원
회 답 일	2024.7.22.
추계번호	24B1071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(지역별 건축물의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)	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2	안 제12조 (개별 건축물의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)	국토교통부장관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기존 건축물의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에 따름(제4항)	의무규정
		신축 건축물의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1조(지역별 건축물의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(개별 건축물의 <u>온실가스 배출</u> 및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)	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¹⁾
- 개정안은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추가하여 ‘온실가스 배출 총량’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
 - 이에 따라 시·도지사의 관할 지역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 설정 및 관리,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,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별(신축·기존)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및 허용기준 제시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신축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허용기준 산출에 필요한 지역별·에너지원별 공급계획이 불확정적이어서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일한 에너지사용량이라도 에너지원별(전기·가스·열·신재생 등) 공급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, 건축물이 이용하는 에너지

1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

제11조(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)

-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)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부분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,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.
-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의 대부분은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건축물 위치의 에너지수급상황에 따라 에너지를 선택하게 됨

- 지역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기준을 개발하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역별 에너지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, 현시점에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기가 곤란함

-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된 ‘목표관리제(건축물)’ 사업을 통하여 2024년 기준 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중임

[표 2] 목표관리제(건축물) 현황: 2022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내역사업	2022	2023	2024
목표관리제 운영	811	951	951
－ 목표관리제도 운영관리	392	532	532
－ 관리업체 제도이행 관리	419	419	419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연도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(II-1)」, 각 연도.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II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 제11조 및 제12조 관련 제도 운영 현황²⁾

(국토교통부 제출자료)

□ 제11조(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) 관련

-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·도별 조례로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
- ☞ 시·도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및 시·도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을 관리

□ 제12조(개별건축물의 에너지총량 제한) 관련

- 제1항 및 제2항 관련: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(2019.10)에서 건물부문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주요 감축수단 제시
- 제3항 관련: 신축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운영
 - 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’ (국토부 고시)에 따라 일부 건축물*에 대한 에너지 소비총량 기준** 적용 중('17.6월~)
 - * 연면적의 합계 3천㎡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
 - **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200kWh/㎡ 미만(공공의 경우 140kWh/㎡ 미만)
- 제4항 관련: 건물부문 목표관리제도 운영

2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

제11조(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)

-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)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,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.
-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6조 및 제27조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관리업체(건물)에 대해 매년 감축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을 평가·관리

[참고자료 2]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 제12조 관련 예산 현황

(국토교통부 제출자료)

□ 신축 에너지소비총량제(제3항)

- 에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('23년 완료)을 위해 정부 예산 지속 투입
 - 온실가스 배출 기준 신설할 경우 건축물 용도별 냉난방 설비 적용 특성, 에너지 종류 등을 고려한 기준 개발 및 평가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추가 예산 소요
-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해당 건축물의 1차 에너지소요량 적정여부를 검토하며, 건축주는 검토수수료 납부
 - 온실가스 배출 기준 신설 시 검토항목 증가에 따른 검토수수료 증액이 필요하며, 건축주의 부담 증가

<신축 에너지소비총량제 관련 예산(보조금은 '23년 종료)>

(단위: 천원)

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6월
검토수수료(민간)	9,891,848	8,890,607	4,952,220	1,991,372
보조(정부)	296,000	236,000	236,000	0
합 계	10,187,848	9,126,607	5,188,220	1,991,372

□ 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목표관리제(제4항)

- 목표 이행계획 검토, 관리업체 지정, 명세서 및 배출계수 검토, 목표설정 및 협상, 이행여부 평가 등 제도 운영 및 관리업체 행정·기술 지원 예산

<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 예산 현황>

(단위: 천원)

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보조(정부)	901,000	811,000	951,000	951,000